

#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 공고(상세)

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공고문은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사업은 **개별 트랙(1인 소상공인 단독 신청)** / **단체 트랙(5인 이상 소상공인 단체 신청)**으로  
 사업이 진행됩니다.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 및 단체만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 
 선정 결과발표 후에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

## 1 사업개요(공통)

구분	트랙① 개별지원	트랙② 단체지원
지원 규모	40개소	60개소
지원 대상	인천시 소재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(개인 신청)	1)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2) 2,000㎡ 내 5인 이상 구성된 단체 (최소 5개 점포~최대 20개 점포까지 구성)
지원 한도	업체당 최대 350만원	업체당 최대 350만원
자기부담금	공급가 초과금액 + VAT	공급가 초과금액 + VAT
신청 주체	소상공인 본인 개별신청	단체 대표자 신청
시공 진행방식	업체별 개별 발주	업체별 개별 발주
선정 방식	서류심사 → 정량평가	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심사위원회

※ 트랙①, ②는 동시에 공고·접수 진행하며, 중복 신청 불가

### ■ 지원내용 : 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·제작(설치)비 지원

- 건물 및 점포 특성에 어울리는 고효율 LED 입체형 간판
- 센터에서 지정한 간판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간판디자인 제작 전문 디자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업종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제공
- ※ 단순 플렉스(천갈이) 간판, 조명 없는 비조명 간판은 지원 불가
- ※ 사업주 임의의 개별 디자인은 지원 불가

### ■ 지원금액 및 한도액

- 업체당 최대 350만원 이내, 공급가액의 100%(원 단위 절사)
- 지원금액 최대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, 공급가액 초과금액과 부가가치세는 본인 부담임.
- 간판 디자인 제작비는 센터에서 디자인 업체로 별도 지급함
- ※ 자기부담금 : 공급가액 초과금액 + 부가가치세(VAT)

## 참고 지원금액 산출 예시

구분	간판 설치 금액			센터 지원금액 (공급가액 100%, 최대 한도액 이내)	자기부담금 (공급가액 초과금액+부가세)
	공급가액	부가세	합계		
A 업체	400만원	40만원	440만원	350만원	90만원
B 업체	300만원	30만원	330만원	300만원	30만원

[질문] A업체 간판 설치비용이 440만원인 경우, 센터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  
 [답변] 센터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액 350만원이고, 나머지 90만원은 자부담입니다.  
 [질문] B업체 간판 설치 비용이 330만원인 경우,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  
 [답변] 센터 지원금액은 300만원이고, 자부담금은 30만원(부가세)입니다.

■ 신청·접수 기간 : 2026. 4. 13. (월) ~ 4. 21. (화) 18:00까지(점심시간 12:00~13:00)

■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(※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)

- 사업 공고 확인 후에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발급하여 등기우편 및 대표자 직접 제출(신분증 지참)
-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,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(1인 1건만 신청 가능)

※ 2025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

▶ 주소 : 인천시 서구 봉오재3로 140(가정동 646-1) 인천신용보증재단 4층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

■ 선정방법 : 서류심사 및 내부 심사 기준항목에 의거 별도 심의 진행

※ 자세한 사항은 각 트랙별 세부 추진계획 참조

■ 선정발표 : 2026년 5월 예정(※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※ 선정결과는 개인별 문자 발송되오니, 신청서상에 대표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

## 2 세부 사업내용

### [트랙①] 개별지원

■ 신청 자격 (※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
-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**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** 있고, **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\***
-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임, 개업연월일 2025. 4. 8일까지 신청 가능
- 법인 주소소재지(본점 소재지)가 타 지역인 경우 신청 불가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
-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- 소상공인 기준(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)에 해당될 것

\* 지원대상(소상공인 기준)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것  
 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될 것[별표1]  
 - (상시근로자 수 기준)  
 ·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
 ·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
※ 센터 및 군·구,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

- (센터) 2025년·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, 2026년 강소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
- (타 기관)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(옹진군),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강화군),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(부평구)

■ 지원규모 : **40개 업체** (※ 예산 한도 내, 지원 규모 변동 가능)

-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

■ 제출서류 (①~⑦번 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발급하여 대표자 직접 제출)

구분	제출서류 목록(필수)
필수	①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및 지원사업 신청서[서식 제1호]
	②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[서식 제2호]
	③ 견적서 - 시공(제작)업체는 인천시 소재, 옥외광고업등록증 소지 업체 - 시공(제작)업체 주소, 연락처, 업체(대표자) 도장 날인 필수 -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
	④ 사업자등록증명원 * 발급처 : 정부24 및 홈택스(온라인), 무인민원발급기 및 관할 세무서(오프라인)
	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불가 * 발급처 : 정부24 및 위택스(온라인), 군·구청 및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
	⑥ 매출액 증빙서류(2024년~2025년) - 과세사업자 : 2024~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 - 면세사업자 : 2024~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* 발급처 : 정부24 및 홈택스(온라인),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
	⑦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- (대표자 포함)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* 발급처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 <a href="https://www.4insure.or.kr">https://www.4insure.or.kr</a> ) - 1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: (대표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발급처 : 정부24( <a href="https://www.gov.kr">https://www.gov.kr</a> ), 국민건강보험공단( <a href="https://www.nhis.or.kr">https://www.nhis.or.kr</a> )
해당 시	⑧ 소상공인확인서(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 서류) * 발급처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 <a href="http://sminfo.mss.go.kr">http://sminfo.mss.go.kr</a> ) ※ 「소기업(소상공인)」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(유효기간 내) ※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매출액 정량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(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) 통합위임장[서식 제3호]

※ 서류 작성 시, 유의사항

-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(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), 매출액 정량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
-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, 통합위임장[서식 제5호] 작성하여 제출
- ③~⑦번 서류는 공고일(4.8일) 이후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

■ 선정 절차

- 1차 : 사업담당자 제출서류 및 신청 자격 요건 서류심사  
※ 신청 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1차 서류심사 탈락
- 2차 : 내부 정량평가 심사 기준항목에 의거 심사 진행,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■ 평가항목

- 업력, 전년도 매출액, 매출액 감소율(2024~2025년), 경영환경개선사업 중복수혜 여부
- 우대사항 (※ 최대 5점)
  - 공고일 기준 인천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(3점)
  - 2026년 센터 교육(스마트스토어 및 디지털마케팅 교육) 또는 소상공인 재도약 컨설팅 수료 업체(2점)
  - 2025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(1점)

※ 매출액 산정방식 : '24년·'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

[예시] 개업일이 2024년 5월 20일, 24년 매출액이 8,000만원인 경우

$$(8,000\text{만원} \div 8\text{개월}) \times 12\text{개월} = \underline{1\text{억 } 2\text{천만원}}$$

↳ 2024년 환산 매출액

[예시] 개업일이 2025년 3월 30일, 25년 매출액이 8,000만원인 경우

$$(8,000\text{만원} \div 10\text{개월}) \times 12\text{개월} = \underline{9\text{천 } 6\text{백만원}}$$

↳ 2025년 환산 매출액

※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은 2024년 매출액 확인 불가하여 매출액 감소율 점수 최하점 부여

- 기타사항 :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업력 ② 전년도 매출액 ③ 매출액 감소율 ④ 수혜 이력 ⑤ 인천시 착한가격 업소 ⑥ 교육 및 컨설팅 수수료 업체 ⑦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## [트랙②] 단체지원

### ▣ 신청 자격 (※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
- 인천 소재 **골목형 상점가 또는 골목상권 공동체이거나 2,000㎡ 내 5개 이상 점포로 구성된 단체**
  - ※ 구성 인원(점포 수)은 최소 5명 이상, 최대 20명까지 구성 가능
- 단체 구성원 개인 자격은 트랙①의 개별 자격 요건 동일하게 적용하고, 업력은 무관함.
- 단체 내 구성원이 개별 트랙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개별 트랙 신청은 제외함

### ▣ 지원규모 : **60개 업체** (단체 수 기준이 아닌 점포 수 기준)

### ▣ 제출서류 (①~⑥번 서류 작성 및 구성원 개별서류 발급하여 단체 대표가 제출)

구분	제출서류 목록(필수)	
필수	①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신청서[서식 제1호]	
	② 단체 구성원 명부 및 개인정보 동의서[서식 제2호]	
	③ 견적서 (구성원 개별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공(제작)업체는 인천시 소재, 옥외광고업등록증 소지 업체에서 제출</li> <li>- 시공(제작)업체 주소, 연락처, 업체(대표자) 도장 날인 필수</li> <li>-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</li> </ul>	
	④ 사업자등록증명원 (구성원 개별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발급처 : 정부24 및 홈택스(온라인), 무인민원발급기 및 관할 세무서(오프라인)</li> </ul>	
	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(구성원 개별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불가</li> <li>* 발급처 : 정부24 및 위택스(온라인), 군·구청 및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</li> </ul>	
	⑥ 소상공인 확인 서류 (㉗, ㉘ 중 선택하여 제출, 구성원 개별 발급)	
해당 시	㉗ 소상공인확인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「소기업(소상공인)」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(유효기간 내)</li> </ul>	㉘ 매출액 증빙서류(2025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</li> <li>-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</li> <li>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대표자 포함)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</li> <li>- 1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: (대표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li> </ul> </li> </ul>
	(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) 통합위임장[서식 제4호]	

※ ③~⑥번 서류는 단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며, 공고일(4.8일) 이후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

## ▣ 선정 절차

- 1차 : 사업담당자 제출서류 및 단체 자격 요건 서류심사  
※ 신청 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시 1차 서류심사 탈락
- 2차 : 현장실사(상권 간판 현황, 거리 및 상권 연속성, 지역 경관 현장 확인 등)
- 3차 : 선정 심사위원회(내부 심사 기준항목 의거 고득점자순 선정)

## ▣ 평가항목

- 정량평가(40점) : 구성 인원(점포) 수, 구성원 평균 업력
- 정성평가(60점) : 집단 가시적 효과(거리·상권 연속성),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, 상권 특색 반영 및 지역 기여도 등
- 기타사항 :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구성 인원(점포) 수 ② 구성원 평균 업력 ③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# 3 신청 제외 및 선정 취소 기준

## ▣ 신청 제외 대상(공통)
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본 센터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
- 본 센터 2026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
- 2026년 군·구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\*으로 지원받은 업체  
\*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(웅진군),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강화군),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(부평구) 등
- 무점포 사업자\*,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 
\*무점포 사업자 : 사업장이 거주 주택, 운송수단,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(또는 대리점)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
-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(사업자등록증 상 업태, 종목)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사업자  
(예시) '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'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간판을 신청하는 경우
- 매출액(수입금액)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2024년·2025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"0"원으로 신고된 경우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업자(업종, 대표자 등) 변경 및 사업장 주소 이전 예정인 업체  
(예시)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간판을 신청하는 경우  
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계양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간판을 신청하는 경우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- 소상공인 기준(①매출액, ②상시근로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
① 매출액 기준 :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[별표1]에 해당 될 것  
② 상시근로자 수 기준
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
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
-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골프장, 유흥주점 등)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되는 경우

- 국고보조금, 장기요양급여(국민건강보험공단)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(ex. 유치원, 어린이집, 장기요양시설 등)

### ▣ 지원선정 취소 (공통)

- 소상공인 기준(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에 해당하는 경우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선정 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간판 설치를 진행한 경우
- 허위, 위법,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사전 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및 공사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동일사업 기간 내 군·구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을 중복지원 받고있는 경우(\*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)
- 사업 완료 기간(8/31일, 월요일) 내 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, 증빙서류 부실 제출, 기한 내 사업수행 미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관련 법률 위반, 과제부실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 4 추진절차

### ▣ 단계별 추진절차

- 선정통지를 받은 후에 제작(시공) 수행해야 함. 선정 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시행한 제작(시공)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

#### [트랙①] 개별지원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	6단계	7단계
신청·접수	서류심사	정량평가 심사	선정발표	역량교육	사업 진행	지원금 신청
방문 및 우편 접수	자격 요건 및 필수서류 검토	내부 심사기준 의거 평가 진행	문자 개별 통보	사업설명회 필수 참석	센터 승인 후 간판 제작 및 설치 진행	완료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

#### [트랙②] 단체지원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	6단계	7단계
신청·접수	서류심사	현장실사 및 심사	선정발표	역량교육	사업 진행	지원금 신청
방문 및 우편 접수	단체 구성원 자격 요건 확인 및 필수서류 검토	상권 현장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진행	단체 대표자 결과 문자 통보	사업설명회 필수 참석	센터 승인 후 간판 제작 및 설치 진행	완료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

## ▣ 디자인 지원절차(공통)

- (1단계) 센터→디자인 업체** 선정업체 정보(업종, 점포 사진, 상호 등) 전달 및 시안 제작 의뢰
- (2단계) 디자인 업체→소상공인** 간판 시안 제시 및 수정 협의
- (3단계) 소상공인→디자인 업체** 최종 시안 확정 동의
- (4단계) 디자인 업체→센터** 최종 확정 시안 전달
- (5단계) 소상공인** 확정 시안 기반으로 간판 설치 진행  
(간판 설치업체 변경 시 센터 승인 후 진행)
- (6단계) 소상공인→센터** 완료 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금 수령

※ 디자인 시안 확정 전에 간판 설치 진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## ▣ 지원금 지급 절차 (공통)

- 선정업체가 총 간판 설치비용(공급가+부가세)을 시공업체로 선입금 후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
  - 비용 지급 시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에서 간판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**계좌이체 필수**  
(현금 지급 및 카드 결제 불가, 가족 및 제3자 거래 불인정)
  - **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, (은행발급용) 송금확인증, 온라인 이체확인증** 제출
  - 완료 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, 지출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8/31(월)까지 제출,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무효 처리
- ※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개월 소요
- ※ 사업 변경/포기 시 해당 서류를 별도 서식 제출(사업 포기 시 7일 이내 제출, 미제출 시 직권 취소 처리)
-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정당한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함. 센터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

## 5. 유의 사항 (공통)

### ▣ 유의 사항

- 간판 설치업체는 인천 소재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며,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서 설치해야 함(※ 간판 설치 전 필수 확인, 추후 서류 제출)
- 신청업체는 본인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신청업체(소상공인)가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**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3개사 참여 가능함.** (시공 참여 개수 초과할 경우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)
- 선정 결과발표 후, 사업 기간(6월~8월) 내 간판 설치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센터로 제출

-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
-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중복수혜 불가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임

## 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 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 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 - 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### ·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

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, 제3자 부당개입, 신청업체 휴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 서류 위변조, 선정통지일 이전 사업 시행,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## ■ 기타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또한 신청·접수 현황, 선정기준표, 업체별 평가점수, 평가 순위, 평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서류의 기재 착오, 연락 불능,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,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**보완 기간 내 서류 미 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**
- 지원 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,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차순위 예비업체를 추가 선정합니다.
-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,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■ 문의처 : 생애주가지원팀(☎032-715-4047)

# 별표 1

## 소상공인 기준(상시 근로자수,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###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###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	상시근로자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10명 미만
2. 음료 제조업	C11		10명 미만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10명 미만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10명 미만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10명 미만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10명 미만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10명 미만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10명 미만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10명 미만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10명 미만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10명 미만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10명 미만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10명 미만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10명 미만
15. 가구 제조업	C32		10명 미만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5명 미만	
17. 수도업	E36	5명 미만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5명 미만	
19. 광업	B	10명 미만	
20. 담배 제조업	C12	10명 미만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10명 미만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10명 미만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10명 미만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10명 미만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10명 미만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10명 미만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10명 미만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10명 미만	
29. 건설업	F	10명 미만	
30. 운수 및 창고업	H	10명 미만	
31. 금융 및 보험업	K	5명 미만	
32. 도매 및 소매업	G	5명 미만	
33. 정보통신업	J	5명 미만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5명 미만	
35. 부동산업	L	5명 미만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5명 미만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5명 미만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5명 미만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명 미만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5명 미만	
41. 교육 서비스업	P	5명 미만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5명 미만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5명 미만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 별표 2

##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사업 분류	업종
56211	일반유희 주점업
56212	무도유희 주점업
68	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 및 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
	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### 「중앙회장이 지정」한 재보증제한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(46463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
	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(47640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전자상거래업(47911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(69390)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경주장 운영업(91113)	경주장 운영업
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건전 문화 관련	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성인용품 판매점
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흥신소
	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경영컨설팅업(71531) 중	기획부동산업 <sup>주)</sup>

주)(운영형태)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